

원문정보제공과 저작권

Document Delivery Service and Copyright

윤 선 영*

Sun-Young Yoon

= 초 록 =

우리 정부가 1999년 12월에 개정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한 용어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 키워드 =

저작권법, 원문정보제공, 전송권, 복제, 온라인 전송, 정보센터, 디지털 정보

ABSTRACT

The regulations relating to online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in the library on the copyright law revised in December 1999. In this aspect, it examines to relate terms and regulations for digital information and online transmission. And it reviews information center's role and copyright law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digital environment.

KEYWORDS

Document Delivery Service, Copyright Law, Reproduction, Digital Information, Information Center, Online Transmission, Transmission Right

* 삼인 C & C (주) 연구위원(SamIn C&C, Consultant)
전주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겸임교수(Jeonju Univ., Add. Professor.)

1. 서언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매체가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라는 측면도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디지털 정보가 복제하기 쉽고, 복수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며 다수자와 접근이 쉽고, 수정 또는 가공이 쉬우며 더 나아가 단편화되기 쉽고 다른 정보와 합성하기도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량의 정보가 축적되고 변형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사실상 저작권자가 최종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행위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문에 권리처리가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이용하여도 권리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종래의 저작물에 비해 관리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제도는 이런 정보를 하나의 실체로 가상하고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주고자 하는 보호방법인데 아직은 종래의 기록매체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것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인쇄매체의 자료인 경우에는 구입 당시에 저작권료를 일단 지불한 것이므로 도서관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래의 의미대로 따른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학술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널리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될 것이다.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무선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디지털 정보(digitised information)이다. 그러나,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인쇄매체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해도 사전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권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 또는 모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저작물만이 디지털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이 개정법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7월 27일에 관련 시행령이 공표, 발효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조항도 신설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정한 법 조항과 이후 공표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여건에서 도서관 등이 전자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등이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개정 내용

공정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전자도서관 시대에 부응하는 관점으로,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 중 도서관 정보디지털화 및 디지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되는 내용을 용어와 해당 조항별로 검토 한다.

2.1 디지털정보 이용관련 용어

먼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조항별로 본다.

[제2조] 용어

9의 2 - 전송 :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우선, “전송”의 정의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도서관 등이 우편은 물론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신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 등이나 개인 등이 이용자(상대)의 요구에 응하여 허용되는 여건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개인보다는 도서관 등이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그 방법의 범위를 일단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서관 등이 전송의 개념 정의만으로 정보를 편의에 따라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송신하여 이용에 제공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도서관 등이 “전송”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정보

를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전송권”은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로 신설한 것이다. 컴퓨터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였다.

[제14조] 복제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라는 개정 내용은 그 밖의 방법이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기기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전자매체로 제작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가 의미하

는 범위가 이전에 흔히 ‘복사’라고 알고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제(광의 : reproduction, 협의 : recopy)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컴퓨터 등의 기기에 저장하는 것 즉, 디지털화 하는 것까지도 정보를 다른 표현방법으로 만든 것으로서 복제로 규정한 것이라 본다.

디지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관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권리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권리가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이용자 특히 정보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학술정보로서 조사·연구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비중이 큰 복제권에 관련한 집중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 설립은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복사권관리기구는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

를 비롯하여 30개국 32단체가 국제복사권기구연맹(IFRRO)의 회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전송권”의 신설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的 설립을 허가하였다. 이번에 설립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존의 6개 단체를 발기인으로 시작하였다. 센터가 설립된 것은 국내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의 설립취지 및 운영에 대응하여 도서관 등의 학술정보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전송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복사기의 사용 대상에 따른 단서 조항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서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복제에 관해 명확하게 구분하였

다. 저작권법 중에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정자에 의한 복제

-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2)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에서 단서 조항을 부가하였다. 이것은 공중용의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므로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저작자 및 출판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고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고 대리인의 입장에서 복사기 운용자나 도서관 등과 ‘복사이용 허락계약’ 및 ‘전송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 징수한 사용료를 센터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단체이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정부는 저작권법 중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도서관 등에 대한 면책범위에 있어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8조의 (2)항을 신설하였다. 제28조 (2)항의 신설과 함께 기존 제28조 (1)항의 각 목은 그 대상이 저작물 중 아날로그 형태로 한정하게 되었다. 신설 제28조 (2)항은 도서관이 관내 이용자의 열람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에 의해 복제하거나 도서관 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도서관 등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목표

로 자관에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의 이용자 그리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LAN을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관 내 도서관 소장정보의 검색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서관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해당 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관외에서의 이용 즉, 특정 시설이외의 관외로 원문정보가 복사 전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웹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및 전송권 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는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등은 제28조 (2)항의 단서 조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에게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점자로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이다. 그

(1)항에서 점자에 의한 복제를 허용한 것에 더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다.

2.3 원문정보제공 관련 시행령

저작권법 제28조와 관련하여 공표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아날로그 정보 및 디지털 정보에 따라 구분하므로서 시설의 범위를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8조 (2)항의 단서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 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 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제3조의 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 2항 후단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장치의 설치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 나. 점자 도서관.
 - 다.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근로 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각 항목에 명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도 동 시행령 제4조(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저작권법 제282조와 관련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된 각 관종의 도서관이 전부 해당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하여서는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법적으로 허용함에 있어서,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이용보다 심각하게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시행령에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였다. 이를 해석함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및 국가의 지원 하에 구축 중인

전자도서관 시행 도서관으로 한정하므로서 전자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를 국립대학교와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보다 먼저 전자도서관 구축을 시작한 사립대학교도 있으며, 시행령에 명시한 국립대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부족 및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도서관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이 첨단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원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약기관 간에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에 있어서 도서관의 입장에 대해 시설지정 기준의 모호함

으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문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때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시스템 상에서 권리보호 및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 의 정보요구는 편리한 기기의 활용으로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자가 적법 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 켜 주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예산지원 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 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제언

우리의 환경은 정보 관리자나 이 용자가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 게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생각이 저작물을 복제와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사용은 그 허용범 위와 제한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네트워크의 사용이 증가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저작물의 공정사 용을 명문화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교 육적인 용도로는 허용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에 즈음하

여 도서관 등의 입장에서 정보를 디 지털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는 것은 회소식이었다. 그런데, 도서관 등의 입장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시행령의 공표·발효 및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的 설립과 관련하여,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 1) 복제·전송할 수 있는 시설지정 에 대한 세부 규칙의 필요성.
- 2)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치 개발 및 설치 지원.
- 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운 용과 관련한 문제.

참고 문헌

- 『개정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서울 :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2000. 8. 9.
- 오승조,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개 정판. 서울 : 박영사, 2000.
-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서울 : 현 암사, 2000.
- 정찬모.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10(23), pp.1 ~18, 1998.
- 宮下佳之. “新たな コンテンツ 流通 形態と 著作権法,” 『コピライ ト』, 2000. 4. pp.2~16.

- 大口一. “圖書館に おける 複製サー
ビスと 著作権,”『圖書館雜
誌』, 94(2), pp.94~96. 2000.
- 前園主計. “圖書館資料の 利用と 著
作権,”『圖書館雜誌』, 94(2),
pp.88~90. 2000.
- 七松敏, 増元俊博, 田中和佳. “マルチ
メディア・デジタル コンテ
ンツと 著作権 保護,”『情報
管理』, 42(12), pp.1013-1021.
2000.
- 黒澤節男, “ILLと 著作権,”『情報の
科學と 技術』, 49(8), pp.399
~404.
- Edwards, J. & Tiwari, S. “Policing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Copyright world, pp.14~17.
2000. Mar.
- Hart, M. “The Future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networked age,” *Copyright
world*, pp.17~19. Dec. 1999/
Jan. 2000.
- Lee, Jones C. “デイジタル圖書館に
おける ドキュメント・デリ
バリー,”『情報管理』, 42(11),
pp.909~924, Feb. 2000.